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황명선·한준호·조승래

이재관 • 박민규 • 송재봉

박희승 · 서미화 · 강득구

주철현 · 모경종 · 염태영

이해식 · 홍기원 · 장경태

김현정 의원(16인)

제안이유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이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하여 보전하는 등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 정 및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 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 3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최저보장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국민생활"을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가 필요한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생산비용 등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의3(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①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최저보장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 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 람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시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제1조(목적)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 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함 목적으로 한다. 으로써 국민생활-----<신 설> 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 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 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 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 · 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 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서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 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이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세도가 필요한 품목을 제겨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 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 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농 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 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시장가격과 기준가 격, 생산비용 등을 농산물최저 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 설>

<u>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u>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6조의3(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① 농산물최저가격보장세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u>1. 대상 품목의 선정</u>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관측 및 추계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 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 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등의 업 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최저보장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 2의2. (생 략)

<u><신 설></u>

3. ~ 5. (생략)

③ ~ ⑤ (생 략)

フト	Ò	1
E	\Box)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시행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